##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모경종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87

발의연월일: 2024. 6. 28.

발 의 자:모경종·정진욱·복기왕

김준혁 • 이훈기 • 강준현

김승원 • 박지원 • 백승아

김 윤 • 박해철 • 윤건영

이준석 • 박정현 • 김원이

김용민 · 정청래 · 오세희

의원(18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회에 대한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는 국회법 제121조(국무위원 등의출석 요구), 제129조(증인·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)를 참고해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.

각 상임위원회에 대한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필수적이나, 명확한 근거 규정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위원회는 정부 부처에 업무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업무보고를 요구 받은 정부 부처는 출석하여 업무보고를 하도록 해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(안 제129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장에 제1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9조의2(업무보고의 요구)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국무위원, 정부 위원 및 행정기관의 장 등의 출석 및 업무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출석 및 업무보고에 관하여는 제1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129조의2(업무보고의 요구) ①
	위원회는 그 의결로 국무위원,
	정부위원 및 행정기관의 장 등
	의 출석 및 업무보고를 요구할
	<u>수 있다.</u>
	② 제1항의 출석 및 업무보고
	에 관하여는 제121조제2항부터
	제4항까지를 준용한다.